

문서화면번호 2128 9816 5097 7600

발행번호 제2-210-2010-7224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화번호 (02)530-3114)

문서번호 및
문서번호

2010. 11. 15.

신 청원호 판사 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 붙기소이유고지



기해가 청구한 불기소이유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1) 시 진 번 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 행 세 45793호	
(2) 고 주 원 성 명	해당사항없음	
이 성 명	(3) 상 화 라	
민 성 명	(4) 주민등록번호	(00000)(0)*****
(5) 주 소 명	나. 직권남용 권리 행사방해	
(6) 사 문 김 사	백재명	
(7) 사 문 년 월 일	2010. 10. 29.	
(8) 사 문 요 지	불기소 (나. 직권남용 권리 행사방해-각하)	
(9) 불 기 소 이 유	별첨 참조	
(10~11)	57	

본 공문서는 인터넷으로 받을수있으며, 전자민원 홈페이지(www.kics.go.kr)의 민관공문서와인 메뉴를 통해 위로
서화면번호(1128 9969-1491-5700) 또는 문서번호의 마지막으로 대상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다만,
문서화면번호는 통화 확인은 민관공문서보다 90일까지 가능합니다.



2010. 10. 29.

사건번호 2010년 형재45767호, 45793호, 53064호

제 목 불기소결정서

김사·백재명은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합니다.

1. 가 이준삼

2. 가 강희락

I. 피의자 3. 나 이준삼

4. 나 강희락

5. 가 강희락

6. 가 이준삼

II. 죄 명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III. 주 문

1. 피의자 이준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2. 피의자 강희락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가하
3. 피의자 이준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4. 피의자 강희락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가하
5. 피의자 강희락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각하
6. 피의자 이준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IV. 피의자사실과 불기소 이유

피의자사실의 요지

피의자 이준삼은 경찰청 정보과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피의자 강희락은 경찰경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



본 공문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전자민원 홈페이지(www.kicis.go.kr)의 민관공사와인 메뉴를 통해 기관
식 확인번호(1128-9969-4491-5700) 또는 문서번호의 바코드로 내용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다만,
문서와인번호는 통한 확인은 받지 않으므로부터 90일까지 가능합니다.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의자 이준삼은 2010. 4. 15. 경찰청 정보2과 사무실에서 '좌파와 우파 교육감 후보의 정보를 수집해 5월내로 보고하라'라는 세부으로 '() 좌파의 선거 전략, 부상급식, 후보단일화 외 좌파 세력들이 어떤 선거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 전교조, 민주노총 등 좌파 세력들이 좌파 교육감 후보에 대해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 자금, 조직적인 면 등/ 범망을 교묘하게 피해서 나가는 축민원 - 학교,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차지한 후보 후보에게 등 지원 인원 헤아리, () 차기 대회에서 어떤 선거에서 이 정도 승신이 있다고 보는지 - 좌파 쪽에서 보기기에 서울, 경기 등 주요 지역에서 이길 것으로 보는지, 그 이유는 ※ 16개 교육감 중에서 어느 정도 승리를 예상하는지, 한나라당에서 반전교조 선략을 내세우고 있는데, 떡하루이 가지고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양•황력이 없다고 보는지 / 이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 우파 교육계는 선거 대비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 우파 교육감 후보들이 일부 이당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면, 선문가들은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우파가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라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경찰청 대문 전산망을 통하여 전국 각 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 장보과를 상대로 발송하였다.

피의자 강희태은 피의자 이준삼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지시하거나 목인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2010. 6. 2.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의 관리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한나라당)과 가까운 성향의 후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을 기획하거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직간접공권행사방해】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인선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이 법률상 이루어지는 위법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지원을 넘용하여 일선 경찰관들로 하여금 이루어지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수사한 결과

1. 대동이 없는 사실

() 2010. 4. 16. 피의자 이준삼이 피의자신 요지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이 본인을 작성하여 지방경찰청 정보과 담당경찰관들에게 청원서 대문 전산망으로 송부하였다.

() 2010. 4. 21. 위와 같은 사실이 연합뉴스 등 언론에 보도되었다.

2. 고발인들의 주장

() 피의자 이준삼이 '좌파 후보의 선거 전략, 차이 세력들이 좌파후보에 대한 지원 일부, 범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축면' 등을 피악하는 등 정보 수집을 놓하여 좌파 후보를 선거법 위반 등으로 수사함으로써 좌파 후보의 당선을 방해하고, '우파 교육계의 선거대비 전략, 우파 선영의 승리를 위한 선문가들의 김해, 우파 후보들이 일부 이당에 바라는 점'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특정정당(한나라당)과 가까운 성향의 후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본인 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하였다.

() 이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과 아울러 경찰관들로 하여금 명예상의 부끄러운 위법한 정보수집을 하도록 시기를 남용한 것이다.

3. 피의자 이준삼에 대하여.

(1) 피의자 이준삼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집교조나 민주노총 등이 정보 침입을 지원한다는 언론보도가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공무원들이 현직 교육감에게 출내기를 한다는 보도도 있어 교육감신기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를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정보 수집은 경찰법 제3조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경찰징계 및 소속기관 자체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근거하여 행하는 직무이고, 그 전자는 일선 정보 담당 경찰관들이 보고를 문서화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정보수집 지시를 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1) 경찰청 정보 담당 경찰관 개인이 일선의 보고내용이나 언론보도 등에서 보고한 항목(아이템)을 찾고, (2) 일선 정보 담당, 전문가 등을 통해 그 아이템의 정의 여부, 내용성, 정보수집 필요성과 가치 등을 검증하고, (3) 보고서를 작성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부 절재를 거쳐 정식으로 보고서 작성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4) 각 지방경찰청에 공식으로 정보수집지시를 하면하고, (5) 수집, 보고된 자료를 분석, 판단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6) 산급자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 본인은 위 첫단계에 해당하는 보고한 항목(아이템)을 찾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내부보고나 실제를 막지 않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다.

평소 업무를 하면서 친분이 있는 9명의 지방경찰청 정보 담당관들에게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언론보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각 후보 선임의 선거진약은 어떤 것이 있고, 이러한 선약이 할후 정치권의 교육감신기 개임, 각종 단체의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등 불법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봐 달라는 취지에서 '아이템 공유'라는 제목으로 본건 문간과 같은 내용을 작성하여 개인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발송한 이메일 원문은 별장 미점 후 농장의 경우처럼 삭제하였다.

본건 문간을 보면 경찰관들로부터 아미한 정보나 보고서를 회신받은 사실은 없다.

본간은 정보보수 친영의 후보의 선거진약이 할후 정치권의 교육감 선거개임, 각종 단체의 불법지원 등과 어떻게 연결될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의도였지 능정 경찰이나 후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자신(피의자 이준삼)은 한나라당의 선거 개회율을 알지도 못하고, 선거와 관련하여 할후 경찰이나 후보자와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본건 이메일 문건을 수령한 경찰관 주명희 등 경찰관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피의자 이준삼이 '아이템공유'라는 제목으로 본건 이메일 문간을 보내왔는데, 이를 정보 아이템 선정을 위한 단순한 업무요정으로 받아들였다.

- 일부 경찰관은 피의자 이준삼의 이메일 문간을 그대로 일부 경찰서 경찰관들에게 보내 관련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보고한만한 자료가 없거나 언론 보도 내용 수준의 자료 뿐이라 별도로 회신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일부 경찰관들은 단

순한 협조요청이므로 저리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있다. 물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고 본인 이메일을 삭제하는 등 본인 이메일에 따라 정보를 하거나 보고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1) 강간성 정보가 문서등록내장 및 가상방법간장 정보와의 접수문서 목록에는 본인 문건과 같은 내용의 문서가 정식으로 처리된 사실이 없다.

(2) 회의자 이준삼이 본인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으로 특정집단이 신기술동의 기회에 참여하거나 그 기회의 실시에 참여하였나는 고발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신기술동의 기회’이라 하는 ‘신기술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제의 개최’ 뒤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에 관하여 지시?지도하는 행위’를 말하고, 관례는 제주도지사 신기술 관련하여 속속 공무원들이 신기술로 바뀐 혼란 속 노지사인 후보자의 방송사 토론회 대답자료를 작성하고 예행연습을 한 행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속속 공무원들이 신기술에 충미한 혼란 난세 상인 후보자의 인터뷰 사과와 토론회 개최의 작성에 관여하거나 신기술 토론회를 중심한 행위, 공무원이 후보자의 홍보물 파악의 수정안 조언을 작성하고 문서를 김포한 행위, 후보자인 안선문?안대식 자료?신기술약?토론회 자료?보도자료?당신소감 등을 작성하여 후보자에게 전내 준 행위, 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혼란 도지사의 선거사무실에 세공한 이도로 그 후보자가 참석하기로 예정된 ‘충청남도 도지사 후보자 조성 토론회’의 질문자에게 전화로 위 토론회에서 할 질문내용을 미리 송부하여 날리고 무니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 회의자 이준삼이 사실하여 발송한 본인 이메일 문건의 내용이 일정 교육감 선거에서 우파 성향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를 수집하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이식기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문이 아니라 회의자 이준삼의 개인 이메일로 문건을 발송한 점, 문건을 발송한 대상도 선체 지방경찰청이 아니라 회의자 이준삼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문건을 발송한 점, 이메일 문건을 주령한 경찰관들은 이를 임무지사가 아니라 개인적인 자원의 단순한 임무임소요정으로 받아들이고 정보보고 등의 회신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경찰 차안정보 수집 자원에서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도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차안정보 수집 산원에서 보수?진보 후보의 선거전략에 대한 정보수집을 요청하는 내용이라는 회의자 이준삼이 주장도 충분히 인리가 있고,

본인 이메일 문건 기재 내용과 이를 발송한 행위만으로는 회의자 이준삼이 신기술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계획 수립에 참여하거나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하는 등 선기운동의 기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단지 이를 인정한만한 자료가 없다.

(1) 회의자 이준삼이 본인 이메일 문건을 통해 인신 침해관들로 하여금 아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등 죄권을 남용하였나는 고발인들의 주장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의자 이준삼이 본인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는 경찰 차안정보 수집을 위한 직무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

는 것이 상당하고 달리 이를 전문변호를 빼아난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 또한, 죽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의무없는 행위가 이복된 것 또는 권리행사의 결과가 발생한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1978. 10. 10. 선고 75도2665)인 바, 본건의 경우 피의자 이준삼으로부터 이메일 문건을 수령받은 경찰관들이 실제로 정보수집 활동을 하지도 않고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는 등 아무런 행위가 이복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당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죽권남용권리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o) 증거불충분하여 범죄임이 없다.

4. 피의자 강회락에 대하여.

(o) 고발인들은 피의자 강회락이 피의자 이준삼에 대한 일 피의사건 기재 명예를 치사하거나 폭언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모하였다고 주장한다.

(o) 그러나, 피의자 강회락의 경우 피의자 이준삼에게 피의사건을 치사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 공모를 하였나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사료가 없고,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의자 이준삼에 대하여 범죄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의자 강회락에 대하여는 범죄임의 인정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o) 각하한다.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무고판단 : 고발인들의 고발은 사실오인으로 입한 것으로 무고함이 인정하기 어렵다.